##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4

발의연월일: 2024. 6. 18.

발 의 자:유용원·임종득·김성원

백종헌 · 임이자 · 주진우

배준영 · 김용태 · 이종배

김도읍 · 김형동 · 신동욱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복무에 전념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부대 밖에 거주하는 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군인에게 일률적으로 월 16만원의 주택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주택수당이 군인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며, 낮은 주택수당으로인하여 군인 주거지원 정책이 관사 및 간부숙소 건립 위주로 이뤄짐에 따라 국가의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군인의 주거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에 대하여 부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군인 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법률 제 호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부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주택수당) 부대 밖에 거주	제14조(주택수당)
하는 자에게는 <u>대통령령으로</u>	<u></u> 부대 소재지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
지급할 수 있다.	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
	<u>당을 지급한다</u> .